

방 위 사 업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4. 3. .

법 제 처 심 사 전

방 위 사 업 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대전 임시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필요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정규정원에서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계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간 분장사무 조정, 부서별 역할 명확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재부,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9호 중 “불법수출 조사·처리”를 “불법수출 검사·처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을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 전력운영계약팀”으로 하고,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을 “기반전력사업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반전력사업전력 운영계약팀장”을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으로 하고,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을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을 “기반 전력사업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를 “각 군에서 요청한 지상, 공통 전력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을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력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력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력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력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력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 계약
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력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력의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
분야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제13조의3 제1항 중 “잠수함사업팀”을 “소해함사업팀”으로, “지원함사업팀”을
“전투지원함사업팀”으로 하고, “잠수함사업팀장”을 “소해함사업팀장”으로,
“지원함사업팀장”을 “전투지원함사업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잠수함사업팀장”을 “소해함사업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원함
사업팀장”을 “전투지원함사업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을 “미래전력사업국제
확정계약팀장”으로, “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을 “미래전력사업국제
한도액계약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
팀장”은 “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장”으로, “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
팀장”을 “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을 “미래전력사업국제
확정계약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는 각각 삭제한다.

1.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2.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3.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
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4.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5.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계약에 따른 국외위조부품 관련 사후조치

제17조제5항 중 “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을 “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
계약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1. 전력운영사업의 국제 성과기반 군수지원계약에 관한 업무
 2. 전력운영사업의 국제 한도액계약(「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
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3. 전력운영사업의 국제 한도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전력운영사업의 국제장비 기술용역 계약(확정계약 포함)에 관한 업무
- 제25조의3제1호라목 중 “잠수함사업팀, 지원함사업팀”을 “소해함사업팀,
전투지원함사업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사목 중 “연구개발총괄계약팀,
체계개발1팀”을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한국형잠수함사업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개발총괄계약팀 및 체계개발1팀을 두며, 연구개발총괄계약팀장”을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잠수함사업팀을 두며,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으로, 같은 항 중 “체계개발1팀장”을 “한국형잠수함사업팀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개발총괄계약팀장”을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체계개발1팀장은 한국형잠수함(Batch- I)”을 “한국형잠수함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5와 같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③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의 2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1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2”를 “131”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4”

를 “115”로 하고,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을 “1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를 “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5”를 “134”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3”를 “114”로 하고,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을 “1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를 “0”으로 한다.

별표 2 중 고위공무원단 “4”를 “3”으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9”를 “18”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을 “9”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6”을 “99”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8”을 “121”로 하고,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4”를 “58”로 하고,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통계서기·공

업서기·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9”를 “11”으로 하고,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6”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 “2”를 “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3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7”을 “18”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를 “14”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0”을 “88”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0”을 “11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6”을 “53”으로 하고,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를 “1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 “1”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17”을 “1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을 “1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국방부령 제1122호, 2023.7.14.) 제3조제2항 중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을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 ⑤ (생 략) ⑥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18. (생 략) 1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u>조사·처리</u>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18. (현행과 같음) 19. ----- ----- <u>검사</u> -----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 조직)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에 기반전력 사업총괄팀 · <u>기반전력사업전력운 영계약팀 ·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 팀 ·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 팀 ·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 ·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u> 및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을 둔다. ②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부이사 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수 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u>기 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u> 및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 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u>기반전력 사업국제계약팀장 · 기반전력사업</u>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 조직) ① ----- ----- <u>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전력 운영계약팀 · 기반전력사업해상공 중전력운영계약팀</u> ----- ----- ----- ----- ----- ----- ② ----- ----- ----- <u>기반전 력사업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u> - ----- ----- ----- <u>기 반전력사업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u>

표준자원관리팀장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협력사업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생략)

④ 기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팀장-----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

1. 각 군에서 요청한 지상, 공통 전력의 -----

2. 각 군에서 요청한 지상, 공통 전력의 -----

3. 각 군에서 요청한 지상, 공통 전력의 -----

4. <u>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u> <u>선사업 중 각 부의</u> 공통품목과 전 력운영분야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u>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u> <u>선사업 중 각 부의</u> 공통품목과 전 력운영분야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 급 승인 6. <u>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u> <u>선사업 중 각 부의</u> 공통품목과 전 력운영분야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u>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u> <u>선사업 중 각 부의</u> 공통품목과 전 력운영분야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 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⑤ <u>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은 다</u> 음 사항을 분장한다.	4. <u>각 군에서 요청한 지상, 공통 전</u> <u>력의</u> ----- ----- ----- 5. <u>각 군에서 요청한 지상, 공통 전</u> <u>력의</u> ----- ----- --- 6. <u>각 군에서 요청한 지상, 공통 전</u> <u>력의</u> ----- ----- ----- --- 7. <u>각 군에서 요청한 지상, 공통 전</u> <u>력의</u> ----- ----- ----- ⑤ <u>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전력운영</u> <u>계약팀장</u>-----
1. <u>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운영</u> <u>사업의 국제 성과기반 군수지원계</u> <u>약에 관한 업무</u>	1. <u>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u> <u>력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u> <u>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u>
2. <u>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운영</u> <u>사업의 국제 한도액계약(「방위사</u> <u>업법 시행령」 제61조제5호에 따른</u> <u>한도액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u> <u>관련 기획·계획의 수립</u>	2. <u>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u> <u>력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u> <u>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u> <u>뢰, 입찰 및 계약 업무</u>
3. <u>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운영</u>	3. <u>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u>

사업의 국제 한도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력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u>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운영 사업의 국제장비 기술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u>	4. <u>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 력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 정 검토 및 심사</u>
5. <u>삭제</u>	5. <u>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 력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 계 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u>
<신 설>	6. <u>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 력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u>
<신 설>	7. <u>각 군에서 요청한 해상, 공중 전 력의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 분야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 자의 제재 건의</u>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함정사업부에 함정총괄계약팀 · 호위함사업팀 · 한국형구축함사업 팀 · 상륙함사업팀 · <u>잠수함사업팀</u> 및 <u>지원함사업팀</u> 을 두며, 함정총괄 계약팀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 기관 ·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호위함사업팀장 및 상륙함사업팀 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 ----- ----- <u>소해함사업팀</u> -- <u>전투지원함사업팀</u> ----- ----- ----- ----- -----

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잠수함사업팀장 및 지원함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소해함사업팀장--전투지원함사업팀장-----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잠수함사업팀장은 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소해함사업팀장-----
⑦ 지원함사업팀장은 지원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전투지원함사업팀장-----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에 미래전력사업총괄팀·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원가팀을 둔다.	① -----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
②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미래전력사업	② -----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장--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장-----

표준자원관리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장 -----
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1.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2.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3.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 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4.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5.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 계약에 따른 국외위조부품 관련 사후조치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	6. 삭제

력운영분야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 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 력운영분야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 정당업자의 제재 건의</u> ⑤ <u>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u>	7. <u>삭제</u> ⑤ <u>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 장 -----</u>
1.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운영 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계약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u>	1. <u>전력운영사업의 국제 성과기반 군수지원계약에 관한 업무</u>
2.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운영 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계약 체결 에 관한 업무</u>	2. <u>전력운영사업의 국제 한도액계 약(「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을 말한 다. 이하 같다) 관련 기획·계획의 수립</u>
3.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운영 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계약에 따 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 의 설정에 관한 업무</u>	3. <u>전력운영사업의 국제 한도액계 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u>
4.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운영 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구매계약 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u>	4. <u>전력운영사업의 국제장비 기술 용역 계약(확정계약 포함)에 관한 업무</u>
5.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운영 사업의 국외 상업구매계약에 따른 국외위조부품 관련 사후조치</u>	5. <u>삭제</u>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 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가. ~ 다. (생략) 라. 함정사업부: 호위함사업팀, 한국형구축함사업팀, 상륙함사업팀, <u>잠수함사업팀, 지원함사업팀</u> 마. ~ 아. (생략)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u>소해함사업팀, 전투지원함사업팀</u> 마. ~ 아. (현행과 같음)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2. ----- -----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한국형잠수함사업단: <u>연구개발총괄계약팀, 체계개발1팀</u>	사. 한국형잠수함사업단: <u>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한국형잠수함사업팀</u>
아. (생략)	아. (현행과 같음)
제27조(<u>한국형잠수함사업단</u>) ① (생략)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u>연구개발총괄계약팀</u> 및 <u>체계개발1팀</u>을 두며, <u>연구개발총괄계약팀장</u>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u>체계개발1팀장</u>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수석전문관 또는	제27조(<u>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u>)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잠수함사업팀</u>----- --<u>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u>---- ----- ----- ----- <u>한국형잠수함사업팀장</u>은 -- -----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u>연구개발총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3. (생략) ④ <u>체계개발1팀장은 한국형잠수함(Batch-I)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제7호는 제외한다)을 분장한다.</u> <u><신설></u>	----- ③ <u>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u>----- ----- 1. ~ 3. (현행과 같음) ④ <u>한국형잠수함사업팀장은 한국형 잠수함</u>----- ----- ⑤ <u>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u>
제28조(한시정원) (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u>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u>
<u><신설></u>	③ <u>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의2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둔다.</u>

신 · 구 정원 대비표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32</u>	<u>131</u>	-1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4</u>	<u>115</u>	+1
.	.	.	.
.	.	.	.
.	.	.	.
.	.	.	.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해양수산서	<u>8</u>	<u>10</u>	+2

기보 · 항공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
.	.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u>	<u>0</u>	-2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35</u>	<u>134</u>	-1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3</u>	<u>114</u>	+1
.	.	.	.
.	.	.	.
.	.	.	.
.	.	.	.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8</u>	<u>10</u>	+2

	.	.	.	.
	.	.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u>	<u>0</u>	-2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	.
.	.	.	.
.	.	.	.
고위공무원단	4	3	-1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	<u>19</u>	<u>18</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u>	<u>9</u>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96</u>	<u>99</u>	+3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28</u>	<u>121</u>	-7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4</u>	<u>58</u>	+4
.	.	.	.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9</u>	<u>11</u>	+2
.	.	.	.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5</u>	<u>6</u>	+1
.	.	.	.
.	.	.	.
사무운영서기	<u>2</u>	<u>1</u>	-1
사무운영서기보	<u>4</u>	<u>3</u>	-1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	·	·	·
·	·	·	·
일반직 계	·	·	·
고위공무원단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	<u>17</u>	<u>18</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5</u>	<u>14</u>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90</u>	<u>88</u>	-2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0</u>	<u>116</u>	+6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	<u>56</u>	<u>53</u>	-3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	·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2</u>	<u>10</u>	-2
·	·	·	·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u>	<u>2</u>	+1
·	·	·	·
·	·	·	·
사무운영서기	<u>1</u>	<u>2</u>	+1
사무운영서기보	<u>4</u>	<u>3</u>	-1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방위사업교육원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7</u>	<u>16</u>	<u>-1</u>
.	.	.	.
.	.	.	.
일반직 계	<u>17</u>	<u>16</u>	<u>-1</u>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4</u>	<u>3</u>	<u>-1</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6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관련)

한국형전투기사업단(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한국형잠수함사업단(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방위사업청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28조 관련)

제2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 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

제2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 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 사보	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한시정원표(제28조 관련)

제28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